



독일 유기농업관련법과 연방유기농계획

정보신청기관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I. 유기농업법(Öko-Landbaugesetz; ÖLG)

1. 개 관

독일에서는 2003년 4월 유기농업법¹⁾이 발효되었다. 2005년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 개정법이 2005년 6월 17일부로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법을 통하여 유기농업을 위한 정보화과제와 통제문제가 단일화되고, 독일 내의 유럽연합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 2092/91)²⁾의 실행(유기농업법 제2조)이 개선되었다. 또한, 농업과 식량을 위한 연방기관인 연방식량농업청(BLE-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에 유기농업에 해당하는 권한이 일부 이양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법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률적인 조건을 창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법은 유럽연합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 2092/91)의 위반의 경우에 대한 제재규

정(유기농업법 제11조 - 형벌규정, 제12조 - 과태료 규정, 제13조 몰수)을 두고 있다. 종래에는 유기농검사소(Öko-Kontrollstelle)는 범위반이 매우 중한 경우에만 해당관청에 보고를 해야만 하였다. 즉, 그 범위반이 해당 기업의 유기농 생산물의 일반적인 판매 금지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없어졌고, 일반적 보고의무로 바뀌었다. 경미한 범위반 사안에 대한 보고의무는 각 란트(Land)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

2. 유기농업법의 구조

유기농업법은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시행, 제3조 통제시스템, 제4조 검사소의 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결정, 제5조 검사소의 의무, 제6조 세관의 협력, 제7조 감독, 제8조 자료의 이첩 및 교환, 제9조 요금·비용, 제10조 권한부여, 제11조 형벌규정, 제



1) 본 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Rechtsakt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auf dem Gebiet des ökologischen Landbaus(Öko-Landbaugesetz; ÖLG)” 이다(BGBl. I .S. 2431, 19. August 2005).
2) 독일에서의 정식명칭은 “Europäische Union- EU-Öko-Verordnung 2092/91” 이다. 본 명령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 IV. 유럽연합 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 2092/91) 참조.

12조 과태료규정, 제13조 몰수, 제14조 경과규정, 제15조 효력발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유기농업법의 주요내용

- ①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농검사소(Öko-Kontrollstelle)가 지니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연방의 통일적인 규제(유기농업법 제5조)
- ② 연방식량농업청(BLE-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에 유기농검사소(Öko-Kontrollstelle)에 대한 허가권한 집중(유기농업법 제4조)
- ③ 각 란트의 해당관청에 대해 유기농검사소(Öko-Kontrollstelle)가 지니는 보고의무규정의 개정(유기농업법 제5조 제2항)
- ④ 유럽연합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형벌과 벌금형에 대해 규정(유기농업법 제11조 - 형벌규정, 유기농업법 제12조 - 벌금규정)
- ⑤ 유기농검사소(Öko-Kontrollstelle)는 밝혀진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각각의 기업에 대해 권한있는 해당관청에 보고의무를 진다. 특히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되었으나 이의가 제기된 생산물의 경우, 법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유기농업법 제3조).

II. 유기농표시법(Öko-Kennzeichengesetz: ÖkoKennzG)³⁾과 유기농표시령(Öko-Kennzeichenverordnung: ÖkoKennzV)⁴⁾

아래 III. 기타 유기농 표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독일은 현재 생필품유통체인, 일부 란트, 유기농조합 등이 각각 고유의 유기농마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많은 유기농마크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와 인증을 위해 통일적인 유기농 인증표시의 도입과 연방차원의 단일법의 제정이 주장되어 왔다.

이를 위해 2001년 12월 독일에서는 유기농표시법(Öko-Kennzeichengesetz)이 제정되어 유기농생산물을 위한 통일적인 인증표시의 법률적인 규율을 해오고 있다. 한편, 2002년 2월부터 발효된 유기농표시령(Öko-Kennzeichenverordnung)은 Bio인증표시(Bio-Siegel)의 형성 및 적용과 벌칙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유기농표시법을 보충하고 있다.

본 법령들을 통하여 유기농생산물의 통일적인 인증표시를 보장할 수 있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던 위탁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유기농마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에도 여러 유기농인증마크가 여전히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농표시령(Öko-Kennzeichenverordnung)은 또한 Bio인증표시를 통한 광고를 규율하고 있다. 본 법령은 그 외에 Bio인증표시(Bio-Siegel)사용자들의



3) 본 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zur Einführung und Verwendung eines Kennzeichens für Erzeugnisse des ökologischen Landbaus”이다(BGBl. I S. 2407, 31, Oktober 2006).

4) 본 법령의 정식명칭은 “Verordnung zur Gestaltung und Verwendung des Kennzeichens”이다(BGBl. I S. 3384, 30, November 2006).

Bio인증표시정보센터(Bio-Siegel-Informationsstelle)에 대한 신고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Bio인증표시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조망과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반사례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한다.

Bio인증표시는 상표법상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상의 채무불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본 Bio인증표시의 소지자인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에 의해 행사되어질 수 있다.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는 시장의 참여자를 위해 Bio인증표시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이 사무소를 통해서 Bio인증표시의 행정절차간소화를 실현함으로써 본 표시의 신속한 시장에서의 도입에 기여하고 있다.



III. 기타 유기농 표시

1. 생필품 유통체인의 유기농마크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 종종 여러 생필품유통체

인 고유의 유기농 생산물 마크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Naturkind(Tengelmann), Füllhorn(Rewe), Terra Pura(tegut), Grünes Land(Metro), Bio Wertkost(Edeka), Hand in Hand(Rapunzel), BioBio (Plus), Gallica(Edeka, Rewe), Thönes Natur Bio (Edeka, Karstadt, Rewe), Alnatura(dm, tegut, Budnikowsky, Alnatura-Läden), Bio-Wertkost (Edeka), Pro natur(Spar) 등등이 있다. 이들 생산품의 원료는 유럽연합 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 2092/91)에 따라 운영되는 업체 혹은 유기농업조합에 의해 인증된 회원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다.



2. 독일 주(州) 고유의 유기농 인증마크

한편, 독일의 일부 란트(Bayern주, Baden-Würt-



5) () 괄호 안은 독일의 대표적인 생필품 유통체인의 이름이고, 괄호 앞의 이름은 이들 체인의 고유 유기농 마크이다. 이들 유통체인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대형마트를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이다.

temberg주, Hessen주)에서는 란트 고유의 유기농인 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각 란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3. 독일 유기농업조합들의 유기농 마크

독일에는 현재 9개의 거대 유기농업조합이 존재하며, 이들 유기농조합은 조합고유의 유기농마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유기농생산물의 유통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아래 표는 총 9,645개의 유기농 업체와 총 562,792 Hektar의 경작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조합들의 현황과 그 유기농 마크에 대한 분석표이다.

4.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현재 생필품유

통체인, 일부 란트, 유기농조합 등이 각각 고유의 유기농마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많은 유기농마크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와 인증을 위해 통일적인 유기농 마크의 도입과 연방차원의 단일법의 제정이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유기농표시법(Öko-Kennzeichengesetz)과 유기농표시령(Öko-Kennzeichenverordnung)이 제정되어 유기농생산물을 위한 통일적인 인증표시의 법률적인 규율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본 법령이 기존의 생필품유통체인, 일부 란트, 유기농조합 고유의 유기농마크를 일률적으로 사용금지하고, 위에서 본 Bio인증표시(Bio-Siegel)로 단일화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에도 이들 여러 마크가 시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복잡한 실정이다.

IV. 유럽연합 유기농명령(EU-Öko-Verordnung 2092/91)

유기농 생필품에 대한 높은 욕구를 법적으로 보호

독일 유기농업조합들의 현황과 그 유기농 마크에 대한 분석표

조합명칭	Demeter	Bioland	Biokreis	Naturland	Ecovin	Gää	Biopark	Ecoland	Verbund Ökohöfe
설립년도	1924	1971	1979	1982	1985	1989	1991	1996	2006
유기농 상품마크									
경작면적 (Ha)	59,755	204,168	20,391	86,620	925	27,606	137,589	1,413	23,325
업체 수	1,343	4,558	603	1,806	190	298	657	23	167

출처: Bund Ökologische Lebensmittelwirtschaft (2007년 1월 1일 현재)

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991년 유기농업을 위한 명령 - Verordnung(EWG) Nr. 2092/91 Landbau - 을 공포했다. 본 명령은 유기농업에 있어서의 생산, 유기농 상표부착과 통제에 관한 공동체의 골격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생산자보호를 위해서 본 명령은 우선 유기농 식물 재배의 통일적인 최소표준을 마련하고, 농업에 있어서의 상세한 통제요구사항과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 생산물의 수입과 가공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1999년 7월 19일 EU농업위원회는 본 명령에 동물사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보충적 명령 - Verordnung EG Nr. 1804/1999 - 을 공포했다. 본 명령의 공포 1년 후, 동물사육을 위한 규제는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2000년 8월 24일 이래로 유럽연합에는 유기농 동물사육에 관한 통일적인 최소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보충적 명령은 유기농사육 및 유기농사료와 병질에 대한 대비 및 유기농 동물 사육에 있어서 가축 총 수에 관한 상세한 결정을 담고 있다.

V. 연방유기농프로그램(Bundesprogramm Ökologischer Landbau)

연방유기농프로그램은 이전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장관이었던 Renate Künast의 주도아래 연방정부가 계획한 유기

농 생필품의 생산 촉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독일 내 유기농 농·축산업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최고 3천 5백만 유로(Euro)가 투자되었고, 그 후 2007년까지는 매년 약 2천만 유로(Euro)가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생산자·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조와 정보제공을 받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농업을 위한 연방연구소(Bundesforschungsanstalt für Landwirtschaft)에 의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와 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⁶⁾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Bonn에 있는 연방식량농업청(BLE-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에 담당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연방식량농업청의 담당 사무소는 정책의 세부계획과 공고를 위한 관할권과 본 프로그램의 행정에 적합한 수행을 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기농업을 위한 경작지는 전체 독일의 경작지 면적 중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 까지는 20%까지 그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본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홍 강 훈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6) 본 Projekt그룹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Prof. Dr. Folkhard Isermeyer(본 프로젝트그룹의 장), Dr. Hiltrud Nieberg (Bundesforschungsanstalt für Landwirtschaft, FAL Braunschweig), Prof. Dr. Stephan Dabbert(Universität Hohenheim), Prof. Dr. Jürgen Heß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Thomas Dosch(Bioland-Bundesverband für organisch-biologischen Landbau e.V.), Dr. Prinz Felix zu Löwenstein(ehemals Arbeitsgemeinschaft Ökologischer Landbau e.V., heute Bund Ökologische Lebensmittelwirtschaft).